

문서번호	감사실-1690					
보존기간	10년					
결재일자	2018.04.17.		협 조			
공개여부	비공개(5)					

특정감사 결과보고

-직원 품위유지 위반 등 보도 건-

2018. 4. 17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배경 및 목적.....	1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1
3. 감사 중점사항.....	1
4. 감사기간 및 인원.....	2
II. 업무현황.....	2
1. 미결업무 현황.....	2
2. 업무지원 및 휴일근무 승인 현황.....	3
III. 감사결과.....	4
1. 제주도 여행(골프 포함)에 관한 사항.....	4
2. 무면허 운전 에 관한 사항.....	6
3. 흥기위협 사건에 관한 사항.....	8
4. 감사심의조정위원회 심의결과.....	10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1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11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11
V. 기타사항.....	11

1. 감사배경 및 목적

이번 감사는 직원 품위손상 행위(골프, 무면허운전, 폭행 등)가 언론에 보도되어 공사 명예 및 공신력을 손상하였다.

이에 ○○○○지역본부 관련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복무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감사대상

이번 감사는 [표 1]과 같이 2018. 3. 22.(목) 언론보도 된 ○○○○지역본부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 1] 언론보도(○○○) 내용

일 자	내 용
‘18. 3. 22.	- ○○○○지역본부 ○○처장과 지사장 4명 등 8명이 동시에 휴가를 내고 제주도 1박 2일 일정의 단체 골프여행을 떠나는 등 LX 간부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 - ○○○○지역본부 직원 A씨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무면허 상태에서 6개월 간 운전을 하던 중 지난 2월 신호위반 단속에 적발돼 집행유예 취소로 법정 구속 - 전남지역본부 모 지사에서 팀장과 직원 간에 흥기난동 사건이 발생하여 부하직원이 팀장을 경찰에 고소

3. 감사 중점사항

이번 감사는 직원 품위유지 위반행위, 직원 근태관리의 적정성, 언론보도 대응과 각 사건별 조치내용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이번 감사는 2018. 3. 27.부터 같은 해 3. 30.까지 4일간 감사자 2명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실의 내부검토과정을 거쳐 2018. 4. 11. 감사심의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Ⅱ

업무현황

1. 미결업무 현황

○○○○지역본부에서는 언론보도일 현재(2018. 3. 22.) 연간목표 462억 원 중 80.8억 원을 완료하여 목표대비 17.5%를 달성하고 있으며, 미결업무 건수가 3,834건으로 지적측량 업무처리 소요일수가 10.8일을 초과하고 있다.

[표 2] 미결업무 현황

2018. 3. 22. 기준

(금액단위: 억 원)

본부	연간목표	완료	연간(%)	미결건수			소요일수
				전체	출장 전	출장 후	
○○○○	462	80.8	17.5	3,834	3,268	566	10.8

2. 업무지원 및 휴일근무 승인 현황

○○○○지역본부에서는 감사일 현재(2018. 3. 24.) 일반 업무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지연처리에 따른 민원 또는 부정적 언론보도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신안지사 등 8개 기관에 총 3회 102명의

휴일근무를 승인하였으며, 또한 지적사업처 등에서 29팀(86명)이 평일 및 토요일 업무지원을 지시하였다.

[표 3] 휴일근무 승인 현황

근무일자	기관	근무자	비고(명)
3. 17.(토)	○○지사	국토정보직 4급 ○○ 외2명	3
	○○지사	국토정보직 3급 ○○○ 외8명	9
3. 24.(토)	○○지사	국토정보직 3급 ○○○ 외9명	10
	○○지사	국토정보직 3급 ○○○ 외7명	8
	○○지사	국토정보직 3급 ○○○ 외11명	12
	○○○○지사	국토정보직 4급 ○○○ 외7명	8
	○○지사	국토정보직 4급 ○○○ 외5명	6
	○○○○지사	국토정보직 3급 ○○○ 외11명	12
3. 31.(토)	○○지사	국토정보직 3급 ○○○ 외7명	8
	○○지사	국토정보직 3급 ○○○ 외17명	18
	○○지사	국토정보직 4급 ○○○ 외2명	3
	○○○○지사	국토정보직 3급 ○○○ 외14명	15
합계	8개 지사		102

[표 4] 업무지원 승인 현황

구분	지원기관	지원규모	지원받는 기관	집행기간
업무 지원	○○○○처외 5개 지사	12팀(36명)	○○,○○,○○지사	2018. 3. 7.(수)~3. 9.(금)
	○○○○처외 3개 지사	12팀(36명)	○○지사	2018. 3. 24.(토)~ 3. 31.(토)
	○○○○처외 4개 지사	5팀(14명)	○○지사	2018. 3. 27.(화)~ 3. 30.(금)
합계	총 15개 기관	29팀(86명)	4개 지사	

1. 제주도 여행(골프 포함)에 관한 사항

가. 관련 규정(지시사항)

- 「복무규정」 제2조(준수사항)
- 「직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지침」 제5조(처분사유)
- 「2018년 제1회 전국 지적○○처장 회의 결과 알림」(○○○○실-1229 : 2018.03.23.)에 따른 측량업무 처리지연에 따른 부정적 언론보도 미연에 방지(31p_○○○○지역본부 보고자료)
-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공직기강 및 근무 철저」(○○○○부-707 : 2018.03.22.)에 따른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나. 조사결과

1) 조사 대상자

- ○○○○처장 국토정보직 2급 ○○○(이하 ‘○○○’이라 한다)
- ○○○○지사 지사장 국토정보직 2급 ○○○(이하 ‘○○○’라 한다)
- ○○지사 지사장 국토정보직 2급 ○○○(이하 ‘○○○’라 한다)
- ○○지사 지사장 국토정보직 2급 ○○○(이하 ‘○○○’라 한다)
- ○○지사 지사장 국토정보직 3급 ○○○(이하 ‘○○○’라 한다)
- ○○지사 수석팀장 국토정보직 3급 ○○○(이하 ‘○○○’라 한다)
- ○○○○사업처 수석팀장 국토정보직 3급 ○○○(이하 ‘○○○’라 한다)
- ○○사업처 국토정보직 4급 ○○○(이하 ‘○○○’라 한다)

2) 조사내용

- 2018년 1월 경 ○○○ 등 8명¹⁾은 ○○○의 공로연수(2018. 5. 11.)를 앞두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위 사람들과 제주도 여행(골프 포함)을 계획하였으며, 여행경비(약 350,000원)는 총무를 맡은 ○○○의 통장으로 각자 이체하였다.
- ○○○는 2월 말경 ‘○○○투어’라는 여행사를 통해 2018. 3. 22.(목)부터 같은 해 3. 24.(토)까지 제주도 여행(골프 2회 포함)을 예약하고 위 8명에게 구두로 통보하였으며,
- 또한, 같은 해 3월 초 ○○○○지역본부의 일반 업무 증가로 인한 인력지원 및 휴일근무 등 본부 운영 상 ○○○○지역본부 본부장 ○○○(이하 ‘○○○’라 한다)과 ○○○○지역본부 ○○○○처 기획경영직 3급 ○○○○처장 ○○○로부터 참석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 ○○○를 대신 참석시켜 2018. 3. 22.(목) 제주도로 2박 3일 일정의 여행을 떠났다.
- 그 결과 2018. 3. 22.(목) 언론사(○○○_○○○○○○○ 등 8개사)를 통해 ‘간부들이 단체 평일골프, 국토정보공사 근무기강 해이’ 등이 언론에 보도되어 공사의 명예 및 공신력을 손상하였다.

1) ○○○○지역본부장 ○○○, ○○○○처장 기획경영직 3급 ○○○, ○○○, ○○○, ○○○, ○○○, ○○○, ○○○

3) 감사자 의견

- ○○○○지역본부의 미결업무(2017. 3. 22.기준)는 [표 2]와 같이 3,834건으로 지적측량 업무처리 소요일수가 10.8일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또는 부정적 언론보도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당지역본부 직원들은 [표 3], [표 4]와 같이 휴일근무와 업무지원 등을 통해 미결업무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 그런데도 해당지역본부의 관리자, 보직예정자, 핵심부서 직원 등 8명은 업무량 증가에 따른 민원 및 부정적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평일(3/22, 3/23)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제주도로 2박 3일 일정의 여행(골프 포함)을 떠났으며, 그 결과 [표 1]과 같이 언론사를 통해 부정적으로 보도되어 공사의 명예와 공신력을 손상하는 등 임직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 또한, ○○○는 해당지역본부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민원 및 부정적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시기에 본부 관리자인 지적○○처장 ○○○ 등 5명의 연차휴가를 승인하는 등 기관운영 관리를 총괄하는 본부장의 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무면허 운전 에 관한 사항

가. 관련규정

- 「복무규정」제2조(준수사항)
- 「한국국토정보공사임직원행동강령」제7조(품위유지)
- 「인사규정」제50조(징계사유)
- 「징계규칙」제8조(징계의 양정)

나. 조사결과

1) 조사 대상자

-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5급 ○○○(이하 ‘○○○’라 한다)

2) 조사내용

- (2017. 8.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같은 해 8. 18. 판결을 확정 받았다
- (2017. 12. 27.) ○○광역시 ○○구 ○○○로 511 매일유업 앞 도로에서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었다.
- (2018. 3. 13.) ○○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4월의 판결이 확정되어 ○○교도소(수감번호 ○○○○)로 수감되었다.
- (이례사항보고) ○○○○지역본부에서는 2018. 3. 13.과 같은 해 3. 16. 본사 관련부서로 위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문서로 보고하였다.
- (근태처리) ○○○○지역본부에서는 2018. 3. 14.부터 같은 해 3. 28. 까지 결근 처리하였다.
- (2018. 3. 26.) ○○○ 직위해제(○○처-1825: 2018. 3. 26.)
- (2018. 3. 28.) 「인사규정」 제50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라 ○○○를 파면에 처함(○○처-1875: 2018. 3. 28.)

3) 감사자 의견

- ○○○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교도소에 수감 되었으며, 또한 위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고 은폐하였다.
- 따라서 ○○○의 행위는 「임직원행동강령」 제7조, 제8조, 「복무규정」 제2조, 「인사규정」 제50조, 「징계규칙」 제8조 별표 1(행위책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조치(○○처-1875: 2018. 3. 28.)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흥기위협 사건에 관한 사항

가. 관련규정

- 「복무규정」 제2조(준수사항), 제12조(특이사항 보고)
- 「감사기준시행세칙」 제75조(사고 등의 보고)
- 「인사규정」 제50조(징계사유)
- 「징계규칙」 제8조(징계의 양정)

나. 조사결과

1) 조사 대상자

- ○○○○지사(전 ○○○○지사) 국토정보직 4급 ○○○(이하 ‘○○○’라 한다)
- ○○○○지사 국토정보직 5급 ○○(이하 ‘○○’라 한다)

2) 조사내용

- ○○○는 2017. 9. 14.(목) 18:00경 ○○○○지역본부 ○○○○지사 (곡성군소재) 주차장에서, ○○로부터 편잔을 받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일명 맥가이버 칼)을 손에 들고 ○○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위협 하였다.
- ○○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7. 9. 20.(수) ○○경찰서에 ○○○를 고소하였고, 그 결과 ○○○는 2017. 12. 12.(화) ○○지방법원²⁾으로부터 특수협박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도 ○○○는 위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고 은폐하였다.
- ○○○는 위 사건과 관련된 경위를 ○○○○지사장으로부터 보고³⁾ 받았으나, 본사에 보고하지 않고 사건 당사자 및 관련 직원을 면담 후 원만하게 화해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같은 해 10. 10.(화) ○○○○지사 회의석상에서 ○○○가 ○○ 및 전 직원에게 사과를 하였다는 보고(유선)를 받고 내부방침⁴⁾을 통해 자체 종결처리 하였다.

3) 감사자 의견

- ○○○는 ○○가 업무가 미흡한 점 등을 들어 편잔을 준다는 이유로 등산용 칼로 ○○를 위협하는 행위는 사회통념 및 상식적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체가 부적절하며,

2) 사건 2017고약14335(2017형제53946), 판사 오**

3) 이례사항보고(○○○○지사-3232: 2017.09.20.), 이례사항보고(○○○○지사-3510: 2017.10.18.), 이례사항보고(○○○○지사-3663: 2017.10.30.)

4) ○○○○지사 이례사항(직원 간 다툼사건) 경과보고(○○○○처-4745: 2017.11.14.)

- 또한, 위 사건과 관련하여 벌금형(300만 원)이 확정되었으나 이를 보고 하지 않은 것은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 따라서 ○○○의 행위는 「복무규정」 제2조 및 제12조, 「감사기준시행세칙」 제75조, 「인사규정」 제50조, 「징계규칙」 제8조 별표 1(행위책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4. 감사심의조정위원회 심의결과

가. 일 시: 2018. 4. 11.(수) 16:30 ~ 17:30

나. 장 소: 본사 3층 감사실

다. 참석위원: ○○실장 ○○○(위원장), ○○○장 ○○○, ○○○○장 ○○○, ○○○장 ○○○, ○○○○○장 ○○○, ○○○○처 ○○○(변호사), ○○○○처 ○○○(노무사), ○○실 수석팀장 ○○○, ○○실 수석팀장 ○○○, ○○실 팀장 ○○○(변호사), ○○실 차장 ○○○, ○○실 수석팀장 ○○○(간사)

라. 심의결과

□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4급 ○○○(전 ○○○○지사)

- 심의결과: 경징계(감봉 2월)

○○○의 행위는 사건의 정황상 우발적 행위로서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할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 후 직원에게 사과하는 등의 행동을 보았을 때 복무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사건과 관련하여 벌금형(300만 원)을 선고받아 이미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았고, 사건 후 장기병가와 인사이동 등의 사정을 고려할 할 때, 사건의 은폐는 고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는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따라 경징계(감봉 2월)를 의결함.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건, 명, 원)

처분지시 일련번호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건 명	처분요구			감사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3-1	○○○○지역본부 (○○처)	복무규정(성실의 의무, 특이사항 보고) 위반			1	○○○ ○○○
3-2	○○○○지역본부 (○○처)	품위유지 의무 소홀	1			○○○ ○○○
3-3	○○○○지역본부 (○○처)	지역본부 운영관리 소홀			1	○○○ ○○○
계			1		2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단위: 건, 명, 원)

일련번호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제 목	조치사항	금액	감사자
		(해 당 사 항 없 음)			

V

기타사항

☐ (지적사항) 감사결과 처분요구(○○처)

☐ (감사결과) 공공감사정보시스템 및 e-감사시스템 등록, 홈페이지 경영공시

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3부. 끝.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징 계 요 구

제 목	복무규정(성실의 의무, 특이사항 보고) 위반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징계 대상자	○○○○지사 국토정보직 4급 ○○○(전 ○○○○○지사)
징 계 종 류	경징계(감봉 2월)
내 용	

위 사람은 2017. 6. 13.부터 2018. 2. 18.까지 ○○○○지역본부 ○○○○지사 수석팀장으로 지적측량업무와 지사장 부재 시 지사운영·관리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하였다.

「복무규정」 제2조(준수사항) 제1호(성실의 의무)에 따라 임직원은 업무운영상 기본이 되는 법규, 정관 및 규정을 지켜야 하고 근면성실한 근무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신속·정확히 처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말과 행동 등으로 조직의 기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다.

또한, 「복무규정」 제12조(특이사항 보고) 및 「감사기준시행세칙」 제75조(사고 등의 보고)에 따라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의 경우에는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장 및 감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공사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말과 행동 등으로 조직의 기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사장과 감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2017. 9. 14.(목) 18:00경 ○○○○지역본부 ○○○○지사 (○○군소재) 주차장에서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5급 ○○(이하 ‘○○’이라 한다)과 업무와 관련된 협의를 하던 중 ○○로부터 편지를 받아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등산용 칼(일명 맥가이버 칼)을 손에 들고 ○○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위협을 하는 등 복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같은 해 9. 20.(수) 위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고소를 당하여 같은 해 12. 12.(화) ○○지방법원⁵⁾으로부터 특수협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사실을 ○○○○지사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였다.

그 결과 2018. 3. 22.(목)과 같은 해 3. 23.(금) 언론사(○○○_○○○○○○ 등 8개 사)를 통해 ‘흥기난동 고소사태’ 등이 언론에 보도되어 공사의 명예 및 공신력을 손상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복무규정」 제2조, 제12조 및 「감사기준시행세칙」 제75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인사규정」 제50조 제4호⁶⁾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사장(○○처장)은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4급 ○○○를 「인사규정」 제51조와 「징계규칙」 제8조에 따라 신분상 조치(경징계: 감봉 2월) 하시기 바랍니다.

5) 사건 2017고약14335(2017형제53946), 판사 오**

6)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사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통보(인사자료)

제 목 품위유지 의무 소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통보 대상자 ① ○○○○처장 국토정보직 2급 ○○○
② ○○○○지사장 국토정보직 2급 ○○○
③ ○○지사장 국토정보직 2급 ○○○
④ ○○지사장 국토정보직 2급 ○○○
⑤ ○○지사장 국토정보직 3급 ○○○
⑥ ○○지사 국토정보직 3급 ○○○
⑦ ○○○○사업처 국토정보직 3급 ○○○
⑧ ○○사업처 국토정보직 4급 ○○○

내 용

위 사람들 중 ○○○는 2016. 2. 26.부터 현재까지 ○○○○지역본부 ○○
○○처장으로 지적측량 업무전반과 인사·조직 및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
하고 있으며, ○○○는 2017. 2. 13.부터 현재까지 ○○○○지사 지사장으로,
○○○는 2017. 2. 13.부터 현재까지 ○○지사 지사장으로, ○○○는 2015. 2. 4.부터
현재까지 ○○지사 지사장으로, ○○○은 2018. 2. 19.부터 현재까지 ○○지사
지사장으로 해당 지사 운영관리를 총괄하고 있으며, ○○○는 2018. 2. 19.부터
현재까지 ○○○○사업처 수석팀장으로, ○○○은 2016. 2. 26.부터 현재까지
○○사업처 팀장으로 ○○○○지역본부 내 핵심 지원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는 2018. 2. 19.부터 현재까지 ○○지사 수석팀장으로 지사장 부재 시

○○지사 운영관리를 총괄하며 근무하고 있다.

「복무규정」 제2조(준수사항) 제3호에 따라 임직원은 공사의 신용 또는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항상 자신의 신분과 직위를 인식하여 공직자로서 품위를 잃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한국국토정보공사임직원행동강령」 제7조(품위유지)에 따라 임직원은 평소의 말 또는 행동과 의사결정이 공사의 윤리적인 명성과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올바른 가치판단과 건전한 말과 행동으로 개인의 품위와 공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2018년 제1회 전국 지적사업처장 회의⁷⁾를 통해 업무량 증가에 따라 업무처리기간 단축에 적극 노력하고 처리기간 지연에 따른 민원발생 또는 부정적 언론보도 등을 사전에 예방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본부의 미결업무가 언론보도일(2018. 3. 22.) 기준 아래 [표 1]과 같이 3,834건으로 지적측량 업무처리 소요일수가 10.8일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또는 부정적 언론보도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래 [표 2], [표 3]과 같이 휴일근무와 업무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

[표 1] 미결업무 현황

2018. 3. 22. 기준

(금액단위: 억 원)

본부	연간목표	완료	연간(%)	미결건수			소요일수
				전체	출장전	출장후	
○○○○	462	80.8	17.5	3,834	3,268	566	10.8

[표 2] 3월 휴일근무 승인 현황

7) 2018년 전국 지적사업처장회의 운영 계획 및 회의 개최 알림(○○○○○-1160: 2018.03.16.) 일시/장소: 2018. 3. 21.(수) 10:00~16:00 / 대전 아드리아 회의실, 참석자: 지역본부 지적사업처장

근무일자	기관	근무자	비고(명)
3. 17.(토)	○○지사	국토정보직 4급 ○○ 외2명	3
	○○지사	국토정보직 3급 ○○○ 외8명	9
3. 24.(토)	○○지사	국토정보직 3급 ○○○ 외9명	10
	○○지사	국토정보직 3급 ○○○ 외7명	8
	○○지사	국토정보직 3급 ○○○ 외11명	12
	○○○○지사	국토정보직 4급 ○○○ 외7명	8
	○○지사	국토정보직 4급 ○○○ 외5명	6
	○○○○지사	국토정보직 3급 ○○○ 외11명	12
3. 31.(토)	○○지사	국토정보직 3급 ○○○ 외7명	8
	○○지사	국토정보직 3급 ○○○ 외17명	18
	○○지사	국토정보직 4급 ○○○ 외2명	3
	○○○○지사	국토정보직 3급 ○○○ 외14명	15
합계	8개 지사		102

[표 3] 3월 업무지원 지시 현황

구분	지원기관	지원규모	지원받는 기관	집행기간
업무 지원	○○사업처외 5개 지사	12팀(36명)	○○, ○○, ○○지사	2018. 3. 7.(수)~3. 9.(금)
	○○사업처외 3개 지사	12팀(36명)	○○지사	2018. 3. 24.(토)~ 3. 31.(토)
	○○사업처외 4개 지사	5팀(14명)	○○지사	2018. 3. 27.(화)~ 3. 30.(금)
합계	총 15개 기관	29팀(86명)	4개 지사	

그런데도 위 사람들은 2018. 3. 22.(목) 업무량 증가에 따른 민원 및 부정적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시기에 단체로 연차휴가(3/22, 3/23)를 사용하여 제주도로 2박 3일 일정의 여행(골프 2회)을 떠났다.

그 결과 2018. 3. 22.(목)과 같은 해 3. 23.(금) 언론사(○○○_○○○○○○○○ 등 8개사)를 통해 ‘간부들이 단체 평일골프, ○○○○공사 근무기강 해이’ 등이 언론에 보도되어 공사의 명예 및 공신력을 손상하였다.

조치할 사항

위 사람들의 행위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으로서 당연히 준수하여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사장(○○처장)은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문 책 요 구

제 목 지역본부 운영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문책 대상자 ○○○○지역본부 본부장 ○○○○
문 책 종 류 경고
내 용

위 사람은 2017. 3. 13.부터 현재까지 ○○○○지역본부 본부장으로 본부의 모든 기관운영을 총괄(지적측량업무, 공간정보사업, 지적재조사, 예산 등)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고 있다.

「복무규정」 제12조(특이사항 보고)에 따라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지사장 등은 지역본부장에게, 원장 및 지역본부장은 사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감사기준시행세칙」 제75조(사고 등의 보고)에 따라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등의 경우에는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지체 없이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지역본부장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장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2017. 9. 14.(목) 18:00경 ○○○○지역본부 ○○○○지사⁸⁾ 국토정보직 4급 ○○○(이하 ‘○○○’라 한다)가 같은 지사 국토정보직 5급

8) 현재 ○○○○지역본부 ○○○○지사에서 근무

○○(이하 ‘○○’라 한다)을 흥기(등산용 칼, 일명 맥가이버 칼)로 위협하는 사건의 경위를 ○○○○지사장으로부터 보고⁹⁾받았으나, 본사에 즉시 보고하지 않고 본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사건 당사자 및 관련 직원을 면담 후 원만하게 화해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같은 해 10. 10.(화) ○○○○지사 전 직원 회의 석상에서 ○○○가 ○○ 및 전 직원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하였다는 내용을 ○○○○지사장으로부터 유선으로 보고받은 후 내부방침¹⁰⁾을 통해 자체 종결처리 하였다.

「2018년 제1회 전국 지적사업처장 회의¹¹⁾」를 통해 지역본부는 업무량 증가에 따라 업무처리기간 단축에 적극 노력하고 처리기간 지연에 따른 민원발생 또는 부정적 언론 보도 등을 사전에 예방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공직기강 및 근무 철저」(○○○○○-707: 2018. 3. 22.)를 통해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등을 지시하였다.

따라서 공사 임직원은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처리기간 지연 등으로 민원발생 또는 부정적 언론 보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지역본부의 미결업무가 아래 [표 1]과 같이 3,834건으로 지적측량 업무처리 소요일수가 10.8일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또는 부정적 언론보도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역본부에서는 아래 [표 2], [표 3]과 같이 휴일근무와 업무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시기에 아래 [표 4]와 같이 해당본부 관리자인 지적사업처장과 소속지사 지사장 4명이 제주도 여행(골프 포함)을 위해 제출한 연차휴가(3/22, 3/23)를 승인하였다.

9) 이례사항보고(○○○○○지사-3232: 2017.09.20.), 이례사항보고(○○○○○지사-3510: 2017.10.18.), 이례사항보고(○○○○○지사-3663: 2017.10.30.)

10) ○○○○지사 이례사항(직원 간 다툼사건) 경과보고(○○○○○-4745: 2017.11.14.)

11) 2018년 전국 지적사업처장회의 운영 계획 및 회의 개최 알림(○○○○○-1160: 2018.03.16.) 일시/장소: 2018. 3. 21.(수) 10:00~16:00 / 대전 아드리아 회의실, 참석자: 지역본부 지적사업처장

[표 1] 미결업무 현황

2018. 3. 22. 기준

(금액단위: 억 원)

본부	연간목표	완료	연간(%)	미결건수			소요일수
				전체	출장전	출장후	
○○○○	462	80.8	17.5	3,834	3,268	566	10.8

[표 2] 3월 휴일근무 승인 현황

근무일자	기관	근무자	비고(명)
3. 17.(토)	○○지사	국토정보직 4급 ○○ 외2명	3
	○○지사	국토정보직 3급 ○○○ 외8명	9
3. 24.(토)	○○지사	국토정보직 3급 ○○○ 외9명	10
	○○지사	국토정보직 3급 ○○○ 외7명	8
	○○지사	국토정보직 3급 ○○○ 외11명	12
	○○○○지사	국토정보직 4급 ○○○ 외7명	8
	○○지사	국토정보직 4급 ○○○ 외5명	6
	○○○○지사	국토정보직 3급 ○○○ 외11명	12
3. 31.(토)	○○지사	국토정보직 3급 ○○○ 외7명	8
	○○지사	국토정보직 3급 ○○○ 외17명	18
	○○지사	국토정보직 4급 ○○○ 외2명	3
	○○○○지사	국토정보직 3급 ○○○ 외14명	15
합계	8개 지사		102

[표 3] 3월 업무지원 지시 현황

구분	지원기관	지원규모	지원받는 기관	집행기간
업무 지원	○○사업처외 5개 지사	12팀(36명)	○○, ○○, ○○지사	2018. 3. 7.(수)~3. 9.(금)
	○○사업처외 3개 지사	12팀(36명)	○○지사	2018. 3. 24.(토)~ 3. 31.(토)
	○○사업처외 4개 지사	5팀(14명)	○○지사	2018. 3. 27.(화)~ 3. 30.(금)
합계	총 15개 기관	29팀(86명)	4개 지사	

[표 4] 연차휴가 승인 현황

구분	직·성명	가는 곳	사유	휴가일	승인일자	승인자
전일 연가	○○○○처장 ○○○	제주	여행	2018. 3. 22.~3. 23.	2018. 3. 19.	○○○
	○○○○지사장 ○○○	제주	여행	2018. 3. 22.~3. 23.	2018. 3. 19.	○○○
	○○지사장 ○○○	제주	여행	2018. 3. 22.~3. 23.	2018. 3. 20.	○○○
	○○지사장 ○○○	제주	가족여행	2018. 3. 22.~3. 23.	2018. 3. 20.	○○○
	○○지사장 ○○○	광주	체력단련	2018. 3. 22.~3. 23.	2018. 3. 20.	○○○

그 결과 2018. 3. 22.(목)과 같은 해 3. 23.(금) 언론사(○○○_○○○○○○○ 등 8개 사)를 통해 ‘간부들이 단체 평일골프, ○○○○공사 근무기강 해이’ 등이 언론에 보도되어 공사의 명예 및 공신력을 손상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복무규정」 제12조, 「감사기준시행세칙」 제75조와 CEO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등 기관운영 관리를 총괄하는 지역본부장의 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직원경고 등 처분에 관한 지침」 제5조 제1항 제1호¹²⁾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사장(○○처장)은 ○○○○지역본부 본부장 ○○○을 「직원경고 등 처분에 관한 지침」에 따라 문책(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12) 상급기관의 지시 및 예규, 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